

의안번호	2219507
의 퇴 인	이주영의원
회 답 일	2026.7.28.
추계번호	26C30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8조의2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방법·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6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18조의2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안 제18조의2)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대상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제2항부터 제6항까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인증 심사·관리 체계 구축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음
- 다만,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의무(제1항)는 선언적·권고적 조항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현시점에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증 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인증의 심사·운영 체계, 예상 인증 건수 및 건당 소요비용 등이 전제되어야 하나, 개정안이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정에 한계가 있음
 - － 아울러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수련활동¹⁾ 인증제²⁾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신설할 아동·청소년 대상의 야외활동의 범위와 규모 등이 기존 제도와 어떻게 구분·중복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움
 - － 참고로,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고제 운영 예산으로 2026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 성평등가족부에서 인증대상으로 지정한 활동유형은 아래와 같음

[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활동 유형

활동유형	내용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또는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단체숙박형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 개별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기준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기준 총 1,463건의 활동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1,393건을 인증하였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